

제3절 매출세액의 계산

1.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구조

매출세액

=과세표준 × 10%(영세율은 0%) +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
매출세액 ±대손세액가감

2. 예정신고 누락분의 확정신고 포함

- 확정신고의 신고대상
 -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기간중의 공급가액을 제외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최종 3월간의 공급가액 신고
 -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예정신고시 누락한 것(예정신고 누락분)
- 예정신고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·환급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.

3. 대손세액공제 및 가산

(1) 의의 및 취지

- **입상판매 부가가치세액의 거래징수**
 - 원칙 : 공급시기인 재화의 인도 혹은 역무의 제공시에 세금계산서 교부, 부가가치세 거래징수
 - 현실 : 입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 거래징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
 - 납부와 회수의 시차 : 신고시 공급자의 선납부, 추후 미수 매출세액 회수
- **미수 매출세액 회수 전에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상태가 되는 경우의 문제점**
 - 공급자 : 거래징수도 하지 못한 세액을 납부
 - 공급받는 자 :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당하지 않고서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

- 문제해결

- 공급자 : 대손확정시 거래징수하지 못한 세액(대손세액)을 매출세액에서 차감(대손세액공제)

- 공급받는 자 : 동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(대손처분받은 세액)

- 대손세액공제 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

- 공급자 :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(대손세액가산)

- 공급받는 자 : 매입세액에 가산(변제대손세액)

		공급시점	대손확정시	대손금 회수 . 변제 시
대손 세액 처리 방법	공급자	납부(환급)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 가산	〈대손세액공제〉 매출세액에서 차감	〈대손세액가산〉 매출세액에 가산
	공급받는 자	납부(환급)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에 가산	〈대손처분받은 세액〉 매입세액에서 차감*1	〈변제대손세액〉 매입세액에 가산
공제 . 가산 적용시기		공급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	대손확정된 과세기 간*2	대손금액을 회수 . 변 제한 과세기간*2

*1 공급받는 자가 폐업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

*2 대손세액관련 공제와 가산은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하다(예정신고시 불가).

(2) 대손세액의 계산

$$\text{대손세액} = \text{대손금액(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채권)} \times \frac{10}{110}$$

대손금액의 요건

- ① 과세공급(면세공급 제외)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일 것
- ②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
까지 대손이 확정될 것
- ③ 회수불능한 채권일 것. 이 경우 회수불능의 판단은 법인세법 및
소득세법에서의 대손금 범위를 준용함.

(3) 대손금의 범위

1. 파산, 강제집행,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2. 사망, 실종,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
3. 상법, 어음법, 수표법,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
4.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

(4) 대손세액공제절차

대손세액공제는 **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**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는 것에 한함.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**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**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**확정신고시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**하고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